

# 전문화, 계열화

##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전력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방위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98년부터 국방부가 국방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대한 정비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비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이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정비 결과 소개

**세** 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조성된 화해무드로 인한 국방비의 동결 내지 감축과 더불어 방산 업계는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방산업체간 통·폐합, 민수전환 등의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 민·군겸용 기술의 확대, 방산물자의 해외수출 등 효율적인 군사비 사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사회일각에서는 국방예산의 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특히 '97년에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98년에는 이미 계획되었던 대형 방위력개선 사업 중 일부사업들이 순연·축소되었으며, '99년도에는 국방비가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방위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방위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전력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방위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98년부터 국방부가 국방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대한 정비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비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세계 각국의 방산정책

세계 방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이스라

엘, 그리고 기타 관련국가의 방위산업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80년대 접어들면서 방산설비의 노후 및 유희화, 재무구조의 악화, 개발비용의 상승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 출범 시기부터는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성이 적극 개입하여 방산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민간업체의 방산 시장 참여 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군사규격을 대폭 완화하고 민간부분의 기술혁신 주기가 3~4년(전자통신은 더 짧다)으로 단축됨에 따라 민·군겸용 기술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방산 구조조정을 적극 장려함에 따라 방산업체의 인수합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최대 25톤까지  
인양 가능한  
한국형 구난전차  
K1-ARV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KF-16

Lockeed Martin사가 Northrop Grumman의 12개 방산업체를, Boeing사가 McDonnell Douglas의 1개 방산업체를 각각 인수하여 현재 과점체제 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의 견인차이며 방위산업의 기반이라는 국방성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아랍 주변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방위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최첨단 무기체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무기시장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산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및 기술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방산업체는 매출액의 5~7%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자체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수요보다 수출에 중점을 두어 방위산업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각 방산업체는 주문생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요변동 및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개발기간 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민수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며, 방산물자 조달시 소유형태(정부, 민간)에 관계없이 경쟁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비용절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인하여 이미 계획되었던 무기체제 획득사업이 순연되는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방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도 공산정권 몰락 후 경제회복을 위해 방산업체의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도 국방비를 감축함에 따라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해외 판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EU국가간의 공동개발 및 분업추진과 방산업체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방비 감축을 극복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기술우위 달성을 위하여

첨단기술의 개발, 방산업체의 구조조정, 방산물자의 수출확대 등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와 문제

3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방위산업은 그 동안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70년대에는 방위산업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기본병기의 국내개발 및 생산에 의한 자주국방 달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주체들이 뜻을 같이하여 노력함으로써 기본병기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올림픽에 대비한 안보강화 논리의 등장으로 조기전력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보다는 기술도입생산 및 해외 직구매를 통한 획득정책이 우선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70년대 방위산업 성장의 관성력이 약화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80년대 방위산업 부진의 여파로 90년대에 들어서는 군의 군사력 건설소요와 방산업체의 공급능력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방위산업은 방산물자 356개, 방산업체 78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방산 여건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과거 주요 방산정책 결정자의 잦은 교체는 정책 변동과 더불어 생산물량의 변동을 가져와 방산업체가 고가로 구매한 원자재의 사장과 생산설비의 유희화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 기본병기 분야의 국내 방산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함에 따라 물량은 감소되고 이에 따라 공장기동률은 계속 하락하여 유희 인력 및 시설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 이후 그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방산업

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산관련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적기에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조급하게 전력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종종 있음으로 해서 방산관련 주체들 간에 상호 신뢰감이 오히려 저하되고, 책임전가 및 상호불신 속에서 방위산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83년부터 시행된 전문화·계열화제도는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업체의 적기 선정, 그리고 방산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복투자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방위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분야가 적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로의 신기술 유입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화 계열화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전문화업체는 복수업체를, 계열화업체는 단수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바, 전문화업체의 복수선정은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재원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방산물자의 대부분이 순수 국내 연구개발이 아닌 국제공동 연구개발 또는 면허생산됨에 따라 해외판매에 있어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산 분야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걸프전과 유고공습에 등장하였던 첨단무기체계는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였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적을 멀리서 볼 수 있는 정보전쟁과 정밀하게 타격 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전쟁을 가능케 하여 이른바 "Deep See and Deep Strike"라 일컫는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를 가져왔다.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유는 전쟁 역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산업의 육성은 당연하나 현재 우리의 군사기술수준과 방위산업체의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방산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는 한 미래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 전문화·계열화 정비

### · 기본방향

작년에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과제로서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방위산업의 새로운 생존전략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방산업체의 가동률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정비의 추진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의 신규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기존업체간 중복투자가 발생된 생산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대기업별로 생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전담(독점)체제는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토록 하였다.

경쟁기능분야는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기술개발의 촉진과 민·군겸용 기술을 활성화하여 방산업체의 자생력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산업체 이외의 일반업체도 전문화·계열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위법령의 정비도 병행하였다.

### · 정비 추진현황 및 결과

“전문화·계열화 제도” 정비는 범정부 차원의 평

가담과 국방부의 자체적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산업체에 대한 실사와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전문화·계열화 정비(안)은 방산업체와 방위산업진흥회의 의견수렴과정과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의 협의회를 통해 '98년 말에 완성되었다.

전문화·계열화 조정구도는 독점, 과점, 경쟁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별 특징과 향후 방산물량, 설비투자 규모(신규와 기존 투자상태를 동시에 고려), 민간분야와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제별로 도출하였다.

전문화 품목/업체는 독과점 및 경쟁체제를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계열화 품목/업체는 핵심부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토록 요구되었다.

화력, 항공, 화생방 분야는 독점체제로, 탄약, 유도 분야는 과점체제로, 기동(차량), 함정, 통신전자, 정보전자, 지휘통제, 광학분야는 경쟁체제로 각각 평가되었으며 세부 품목별로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전문화·계열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정비와 관련하여 방위산업진흥회는 “기존 전문화·계열화 업체 및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지정이 필요한 품목 및 업체만 추가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였으나 검토 결과, 전문화·계열화 품목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신규 개발분야의 경쟁이 불가하며, 품목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면 품목전체를 해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초 조정계획대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방산업체는 “전문화·계열화 36개 품목(23개 업체)에 대하여 이번 전문화·계열화제도 정비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검토 결과, 14개 품목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자동소화 장치, 가스터빈 엔진 등 7개 품목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필요한 품목으로 검토·판단하여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대공화기, 열상장비 등 15개 품목은 기존의 적격업

체가 있거나 다수업체가 개발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 전문화 업체/품목 정비

전문화 업체는 전용 설비/유사기술 특성별로 분류한 완성장비를 체계 종합하는 업체로서, 범정부 평가팀과 국방부 실무위원회에서 대상 세부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화 정비를 실시하였다.

대기업별 전담체제 구축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각 무기체계 분야별 전담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담업체 선정시 주력업종 여부, 방위산업 기여도, 방위산업 참여정도, 재무 및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력업종 여부는 전용시설(제조, 시험) 보유 능력, 연구 및 기술인력 보유실태, 첨단/전용 기술 수준 등

- 방위산업 기여도는 국방과학기술 연구실적,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생산실적, 국산화 추진실적, 민수산업 파급 효과 등
- 방위산업 참여정도는 연구개발 투자실적, 방산 기술 축적 노력 정도
- 재무 및 경영 능력은 재무구조와 경영 능력
- 기타 사항으로 수요자인 각군의 만족도와 방산 기술 발전 잠재성 등

6개 무기체계분야의 전문화 17개 품목, 19개 업체에 대한 범정부 평가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력무기체계에서 소구경은 향후 소요물량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전담체제로 단수 지정하였으며, 중구경은 기존의 2개 업체에서 단수 지정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탄약은 소·중구경탄, 투하탄, 로켓탄 등으로 구성된 일반탄약과 조연탄(조명탄, 연소탄), 전자광학탄으로 분류하여 복수 지정함으로써 과점체제화 하였다. 화생방 무기체계는 현행체제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포탄 제조 공정

체제별 특징

구 분	독 점 체 제	과 점 체 제	경 쟁 체 제
형 태	1개 업체지정	2개 업체지정	3개 업체지정(해제)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으로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 개선소홀</li> <li>• 경쟁에서 독점전환시 가격상승 유발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된 생산물량하에서 치열한 경쟁유발</li> <li>• 경쟁탈락 업체는 설비 가동률 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수요자 체제에선 업체 간 출혈경쟁 유발</li> <li>• 계획 생산체제 구축곤란</li> <li>• 물량부족시 가동률 저하</li> </ul>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생산/대규모투자 필요시 중복투자 방지</li> <li>• 계획생산체제 구축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개념 도입으로 경제성 추구</li> <li>• 규모 경제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간 경쟁으로 가격하향</li> <li>• 경쟁으로 품질·기술 향상 유발</li> </ul>
적 용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투자 분야</li> <li>• 소량 생산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적 특성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기술/설비 호환 분야</li> <li>• 대량생산 분야</li> </ul>

기동무기체제(경계도차량)는 각 업체별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전담화 조정에 따라 탈락업체가 발생할 경우, 탈락업체가 보유한 시설 및 기술의 사장·폐기가 예상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이 고려되었고, 업체 능력면에서도 명확한 우열구분이 곤란하였다.

그리고 각 업체는 향후 소요물량뿐만 아니라 수출 및 정비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향후 가동률이 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설비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함정무기체제(잠수함)는 향후 소요물량이 적지 않고 신규 투자규모도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과점체제 유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과점체제 유지는 독점폐해 방지와 특혜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공기 분야는 항공산업관련 업체에 대한 구조조

범정부 평가팀별 평가 결과

평가팀	분 야	현 행	기 존 업 체	평 가 결 과
1팀	화 력	소 구 경	대우정밀	현 행 *유탄발사기 포함
		중 구 경	대우정밀, 통일중공업	통일중공업
	탄 약	소·중구경	풍 산	일반탄약 (한화, 풍산)
		대구경탄	풍산, 한화	
		비발사탄/유탄	한 화	
		투 하 탄	풍산, 한화	
		로 쏜 탄	한 화	
		조 명 탄	삼양화학, 한화	
		연 소 탄	삼양화학, 한화	
	전자광학탄	삼양화학, 풍산	현 행	
화생방	보호장비/물자	삼양화학, 삼공물산	현 행	
	탐지/경보장치	삼양화학, 한국통신기	현 행	
2팀	케 도 차 량	경계도차량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 행
		중계도차량	현대정공	현 행
3팀	잠수함	잠 수 함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 행



정 계획(산업자원부 주관)에 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 P24 아래 표는 범정부 평가팀에서 실시한 6개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며, 화력(소구경, 유탄발사기)분야만 전담(독점)체제로, 탄약(소·중구경, 비발사탄, 유탄)은 독점에서 과점체제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문화 정비를 실시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범정부 평가팀을 구성한 정부부처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위산업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차후 방위산업관련 정책수립시 협조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국방부 실무위원회에서 전문화 대상 4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본다. 경쟁체제 전환은 민수와 호환성이 높고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품목, 적격업체가 없거나 업체 미지정 품목, 연구개발 또는 체계개발 실적이 없었던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조정하였다.

전문화 유지는 전문화 품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화 업체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군소요 및 전용설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육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래 표는 국방부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로 전문화 업체/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검토대상 전문화 품목은 59개 품목(기존 전문화 47개 품목, 신규건의 12개 품목)으로서, 전문화 28개 품목(독점 15개 품목, 과점 13개 품목)과 미지정 및 경쟁 31개 품목으로 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배제된 종전의 제도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이 8개 품목에서 직접 방위산업에 참여토록 지정되었다. 따

라서 독과점체제는 기존품목 대비 60%, 검토대상품목 대비 47%로 감소토록 조정되었다.

• 계열화 업체/품목 정비

계열화 업체는 완성장비의 부품 단위별로 분류한 부품 생산업체로 계열화 정비를 추진한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경쟁가능분야, 민수와 호환성이 높은 분야, 민간기술이 선도하는 분야 등으로 P2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대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품목(100개 품목, 20%이내)은 향후 군소요가 적고 외국에서 수출을 통제하거나 군사기밀 보호가 요구되는 정부 국책과제 품목으로서 집중적인 육성을 위하여 독과점체제로 유지토록 한다.

둘째, 중소기업 보호품목(20~30%)은 대기업이 점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품목으로 중소·벤처기업간에도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다.

셋째, 경쟁가능품목(50~60%)은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높은 품목, 민간이 선도하는 분야의 품목으로서, 품목해제나 업체 미지정을 통하여 완전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되겠다.

계열화 정비를 위하여 국방부는 자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열화 418개 품목(기존 241개 품목, 신규건의 177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계열화 품목/업체의 평가 결과로 핵심품목은 94개 품목(기존품목/업체유지 82개 품목, 신규지정 12개 품목)을, 중소기업 보호품목은 22개 품목을, 품목해제/미지정은 302개 품목(72%)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기존 14개 업체가 탈락하였고 3개 업체가 신

국방부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구 분	대 상 품 목
경쟁체제전환	차륜차량, 일반함정, 유선장비(교환기류), 유선장비(반송장비류), 무선장비, 전신전송장비, 레이저장비, 교량복구장비, 전파항법, 통신보안, 자동화체계 등
전문화 유지 품 목	유도무기, 공기부양선, 통신전자, 화력(중·대구경, 대공화기), FRP함정, 전술통신체계, 추적장비, 수중유도무기, 화생방 제독장비 등



품목/업체 경쟁확대 방안

구 분	독 과 점	중소기업간 경쟁	완 전 경 쟁
대 상	핵심 품목	중소기업 보호품목	경쟁가능품목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시설투자/소량의 군소요</li> <li>• 고도의 전략비익품목</li> <li>• 수입통제품목</li> <li>• 정부 국책과제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육성 필요품목</li> <li>- 대기업 참여제한품목</li> <li>- 군전용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업체 경쟁가능</li> <li>- 상용품목</li> <li>- 민·군겸용품목</li> </ul>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분류</li> <li>• 업체단수선정</li> <li>※ 군소요량 고려 필요시</li> <li>2개 업체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분류</li> <li>• 업체선정유보</li> <li>- 중소벤처기업간 경쟁유도</li> <li>- 필요시 개발기간 동안 잠정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해제</li> <li>• 업체미선정</li> <li>- 개발완료 후 5년간 수의계약 보장</li> <li>- 5년 후 경쟁체제로 전환</li> </ul>
방 산 물 자 지정과의 관계	방산물자 지정원칙	선 별 지 정	방산물자 지정제한
비 율	20% 이내	20~30%	50~60%

규선정 되었거나 조정되었다. P.27 위의 표는 계열화 업체/품목의 정비 결과를 보여 준다.

• 관련법규 정비

법규 정비는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시행과정에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도 방산업체의 인수·합병(M&A) 기준과 절차의 제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위산업 관련법령·규칙(규정)의 100개 조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벤처·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대상범위 확대 (법 제4조의 3 제1항)
- 방산업체의 인수·합병(M&A)시 정부승인제도 신설 (법 제4조 제3·4항)
- 방위산업진흥회에 방산업체 보증기금의 설치 운영 (법 제22조의 3 제5항)
- 전문화·계열화의 품목해제/업체취소 요건 추

가 (시행령 제5조의 3)

- 방산업체의 인수·합병 및 기타사유로 인한 경영상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의 기준, 요건 및 절차를 신설 (시행령 제5조의 2 제1~3항)
- 유희화된 방산물자생산 전용설비·기계의 철거 또는 폐기시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시행령 제7조의 2 제1·2항 및 제26조 제1항 제4호)
-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전에 생산된 방산물자를 군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전문화·계열화 품목의 분류 및 업체의 선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시행규칙 제11조 제1·2항, 제11조의 2 제12조의 2)
- 연구 및 시제생산 위촉을 전문화/계열화 업체에 우선권 부여(시행령 제28조 제2항)
- 벤처·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주요 부품을 국산화 개발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 전문업체의 독과점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을 사

계열화업체/품목 지정결과

구 분	정 비 내 용	주 요 품 목
핵심품목 (94품목)	기존품목/업체유지	총/포신소재, 디젤엔진, 적외선탄색기, 가스터빈엔진, 감속기어, 적외선탄지기 등
	신 규 지 정	복합방탄재, 대우도탄기만체계, 통신제어장치 등
중소기업 보호품목 (22품목)	-	전원공급기, 무정전공급장치, 송수화기, 지상측정기 등
기존품목 해제/미지정 (302품목)	품목/업체취소	송탄장치, 레이저발진기, 수중청음기 등
	품 목 해 제	모의훈련기, 센스경보기, 조종석, 배아링 등
	미 지 정	구동장치, 유압모터, 풍향풍속계, 무전기, 발연기 등

전에 차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 방연구원이 주관하여 주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규정 제5조 및 제18조)  
 -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종 협의회를 폐지함에 따 른 전문화·계열화협의회를 폐지(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 제27조)

• 기대되는 효과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예 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재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M&A 허용으 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체질개선 파급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독과점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따라서 국가재원의 낭비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독과점 유지에 따른 가격상승, 기술개발



대우중공업이 독자개발한 40밀리 쌍열함포 노봉

소홀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연구원으로 하여금 3년 주기로 방산업체를 정밀평가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둘째, 계열화 품목에 대한 경쟁체제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보호품목을 선정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첨단 민간기술의 군용화가 촉진될 것이며, 전체적인 방산기술 수준향상과 비용절감,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국민경제효과와 방위산업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의 M&A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안보와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허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따라 정부 의존적인 경영방식의 변화와 또한 방산업체의 자생력 조성 및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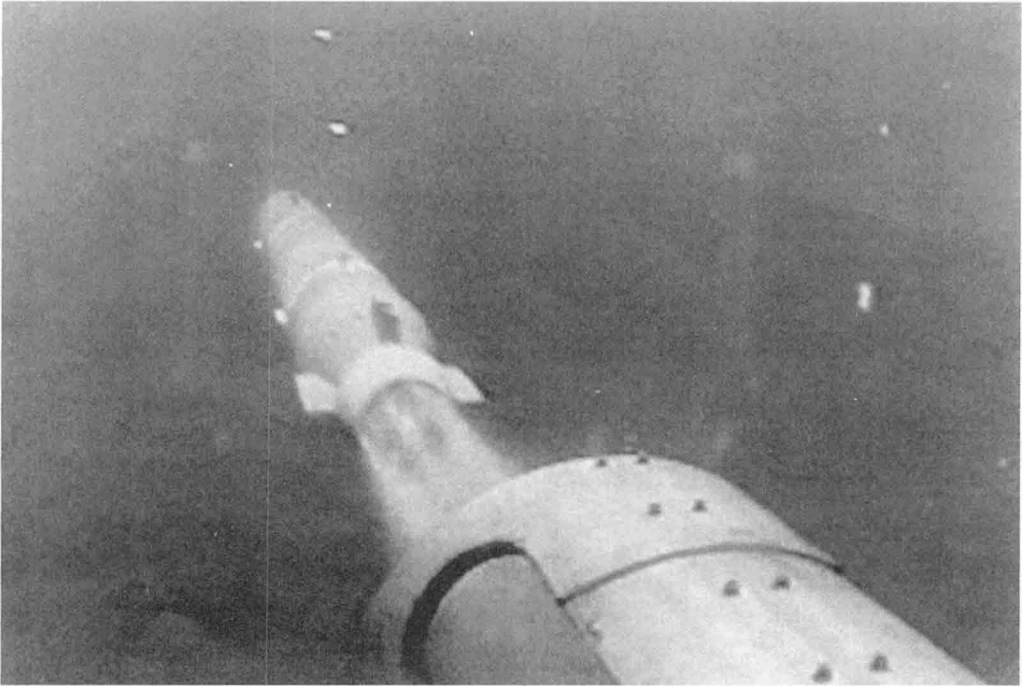
## 향후 발전방향

국방부는 금년도에 계획된 방산물자 지정취소 문제를 기존 방산물자 운용유지 및 원활한 조달, 수출 촉진, 방산업체의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물자에 대한 조세 부과시 초래되는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98년말로 폐지예정이었던 방산물자 생산용 수입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 사항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방산육성기금은 국내 방산물량의 한계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환차손 등의 문제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총34개 업체에 355억원을, 이 중 25%에 해당하는 88억원을 중소방산업체에 중점적

LG 정밀에서 개발한 첨단어뢰의 수중 발사 장면



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화·계열화제도 정비 및 구조조정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으로 아직도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방산분야의 발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전문화·계열화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품목과 민·군 겸용기술확대 품목은 경쟁체제로 유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업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체 기술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의 방위산업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 개념의 경쟁체제 방위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다.

둘째, 수출지향의 기술개발형 방위산업 육성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산수출 주요 품목은 적은 수량의 장갑차, 기동차량 등을 제외하면 탄약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업체만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산수출지원을 위해 방산육성기금의 확대 조성, 수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별 수출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확대 추진이다. 방위산업의 기술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우리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이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능력의 확보를 위한 기술기반 구축의 한 방안으로 판단하여 '97년부터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으나 매년 사업 규모면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방획득개발 관련 정보 중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한 정보와 방산 관련정보

를 방산업체에 제공 또는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공개할 예정이다.

## 맺는 말

'70년 이후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물자 및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전쟁수행개념이 변화되고 국방비가 한정되는 등 국내외 여건 변화 때문에 현재의 방산 체제로서는 도저히 미래전쟁에 대비한 첨단무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경쟁력확보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방위산업에 대한 조정결과로 일부 전문화·계열화 업체가 탈락되거나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가동률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벤처·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첨단 민간기술을 방위산업에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의 세계 선진국들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방산분야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방위산업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육성되기보다는 방위산업의 주체들인 국방부, 소요군,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이 혼연일체되어 방위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에 맞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防